

제2974호  
2023. 1. 19.

발행인 :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길성  
편집인 : 홍보담당관 주재봉  
전화 : 3396-4955  
(http://www.junggu.seoul.kr)

공 고

선	기관 의 장
람	

# 구 보

● 공 고

제2023-67호 : 서울특별시 중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안 행정예고 ..... 2

이 훈령(안)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-67호

「서울특별시 중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」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6조 및 「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.

2023년 1월 19일  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## 서울특별시 중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안 행정예고

### 1. 제정이유

- 가. 청원법 전부개정 및 청원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청원심의회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훈령으로 제정하여 청원제도 의 원활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  - (1) 「청원법」 제8조 (청원심의회)
  - (2) 「청원법 시행령」 제3조 (청원심의회 의 구성 및 운영 등)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(안 제1조)
- 나. 적용범위 (안 제2조)
- 다. 주관부서·처리부서 (안 제3조)
- 라. 심의회 구성·심의사항 및 개최 (안 제4조~제6조)
- 마. 심의회 운영 및 수당 (안 제7조~제8조)

### 3. 의견제출

- 이 훈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가. 제출처 : 서울특별시 중구청 감사담당관
- 나. 연락처 : 전화 02-3396-8020, 팩스 02-3396-9017
- 다. 전자우편 : cptjy@junggu.seoul.kr
- 라.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(중구청 감사담당관)
- 마. 기재사항
  -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  -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  -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

※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.  
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<<http://www.junggu.seoul.kr>(행정정보→구보/입법예고) 클릭>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 
 ● 구보게재의뢰 TEL.(02)3396-4955 / FAX.(02)3396-9022/3  
 ●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,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.  
 ※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 
 ※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공람																			
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

### 서울특별시 중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안

서울특별시 중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.

#### 서울특별시 중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「청원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에 두는 청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①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중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대하여 적용하며, 구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준용하거나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② 청원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

**제3조(청원업무 주관부서처리부서)** ① 「청원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,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시행령”이라 한다) 및 같은 법 시행규칙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(이하 “주관부서”라 한다)는 감사담당관이 된다.

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(이하 “처리부서”라 한다)에서 담당한다. 다만, 처리부서가 불명확한 경우 또는 처리부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처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.

**제4조(심의회 구성)**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되,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.

② 심의회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부구청장이 되며,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외부위원은 구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④ 내부위원은 부구청장, 행정관리국장, 감사담당관으로 하고,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.

**제5조(심의사항)**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

2.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 결과 등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
3.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
**제6조(심의회 개최)**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심의회 운영)**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 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,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②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(화상회의를 포함한다)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.

1.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
2. 긴급한 사유로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
3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
4.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
5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③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,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한 후에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,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같다.

⑤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.

**제8조(수당)**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#### 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###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

안 건			
일 시	년	월	일
검 토 의 견			

위원 성명 : (서명 또는 인)

[별지 제2호서식]

###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

안 건					
일 시	년	월	일		
심 의 결 과					
< 서울특별시 중구 청원심의회 위원 >					
구 분	성 명	심 의 의 견			서 명
		찬성 <small>(심의결과 동의)</small>	반대 <small>(심의결과 반대)</small>	비 고	
위원장					
위원					
위원					
위원					
위원					
위원					
위원					

[별지 제3호서식]

###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

청원제목		
청원인	성명	
	주소	
청원요지		
검토의견	청원사항 검토내용 및 개최 이유 등 기술	
<p>「서울특별시 중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」 제6조에 따라 심의회 개최를 요구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   월   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처리부서의 장 <span style="float: right;">(서명 또는 인)</span></p> <p><b>서울특별시 중구 청원심의회 귀중</b></p>		